

#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 I. 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

-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1
- 2. 디지털 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2
- 3.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4
- 4. 디지털 성폭력,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8

## II. 이것도 디지털 성폭력인가요?

- 1. 디지털 성폭력, 한눈에 보기 11
- 2.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사례 12
- 3. 그 밖의 디지털 성폭력 20

## III.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예방과 대응을 위한 나의 역할

- 1. 대학,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27
- 2. 누군가의 피해촬영물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32
- 3.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42

## IV.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안내 45
- 2. 실무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사례 Q&A 48

## V. 우리 모두, 일상에서부터!!

- 1.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2
- 2. 실천 전략, 이것부터 합시다!! 52
- 3. 제도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기 53

# I. 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2. 디지털 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3.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4. 디지털 성폭력,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 자신의 몸과 성적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여 이미지로 소비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데이트 폭력’, 스토킹, 성매매, 준강간,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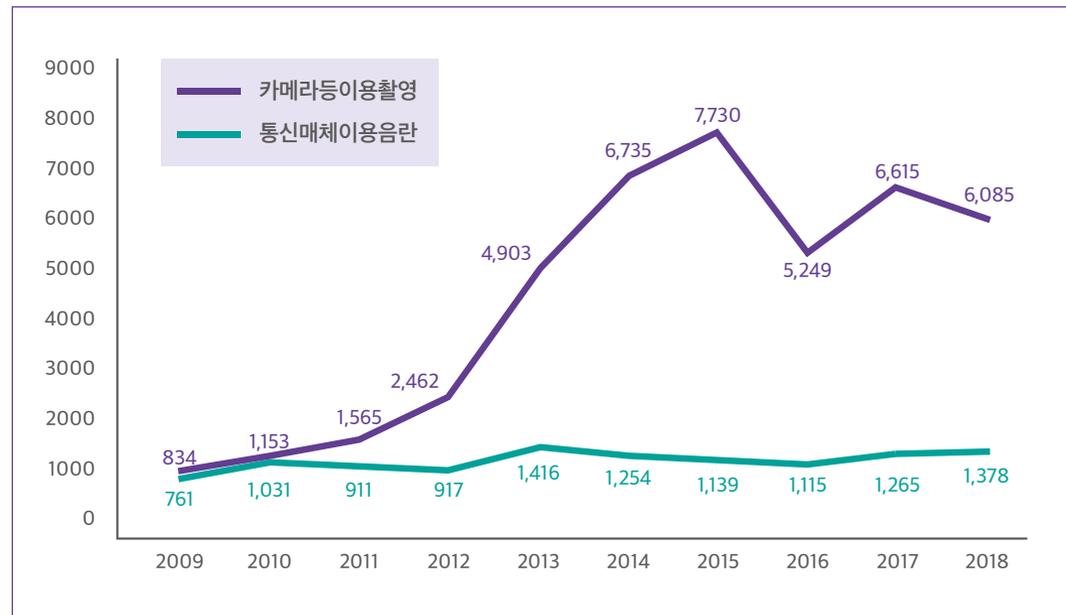
↳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2. 디지털 성폭력, 왜 발생하나요?

### ■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건수는 564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6,615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2007년 240건에서 2017년 1,265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혹은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림1]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추이(2009-2018년)  
출처 : 대검찰청(2019), 「2019 범죄분석」

### ■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그 이유는?

-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의 공유,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등 디지털 성폭력은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폭력이 놀이 문화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찍고, 올리고, 공유하는 것일까요?’
- 우리 사회에는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남자지.” 등의 인식이 존재합니다.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남성성’을 따르지 않거나 이 연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은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편하’되기도 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함께 보고 즐기기도 하는 허용적인 성문화를 만들어내고 남성들의 묵인과 연대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는 경제적 보상과 문화적 지지, 또 다른 남성들로부터의 인정을 얻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방식의 성적 공격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장려하는 성폭력 문화 역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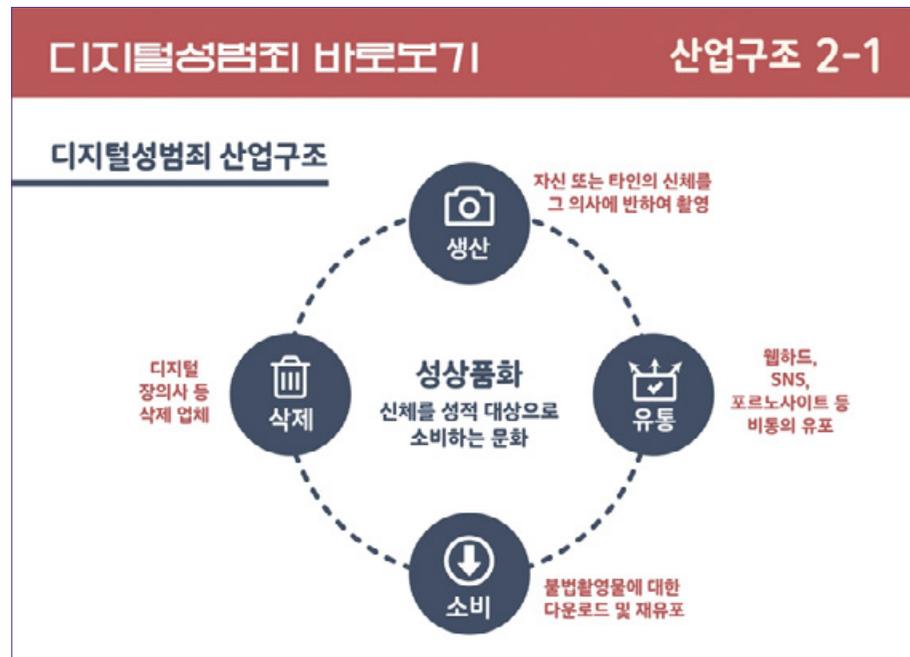


[그림 2] 기자 단체대화방 내 ‘성폭력의 놀이 문화’  
출처 : 미디어오늘(2019.4.19),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좀’

### 3.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 디지털 성폭력과 기존 여성폭력의 차이

-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유포,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SNS에 유통된 비동의 촬영물이 불법 성인사이트로 유입되거나 성매매 광고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 유통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파일 공유가 이뤄지는 P2P나 분산되어 있는 조각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토렌트 등의 공유 방식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 불법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것 또한 디지털 성폭력 산업을 확장시키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생산자, 유통업체, 삭제업체가 유착된 착취와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법촬영은 지속되며,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 3]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P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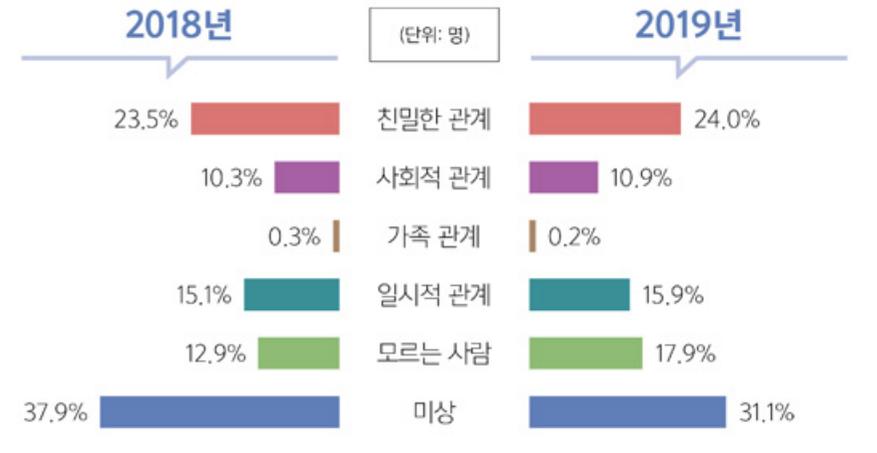
- 이와 같이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여성에 대한 폭력, 성매매 산업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 디지털 성폭력 가해의 특성

| 구분   | 합계           | 친밀한 관계      | 사회적 관계      | 가족 관계    | 일시적 관계      | 모르는 사람      | 미상          |
|------|--------------|-------------|-------------|----------|-------------|-------------|-------------|
| 2018 | 1,315 (100%) | 309 (23.5%) | 136 (10.3%) | 5 (0.3%) | 198 (15.1%) | 169 (12.9%) | 498 (37.9%) |
| 2019 | 1,936 (100%) | 464 (24.0%) | 211 (10.9%) | 5 (0.2%) | 307 (15.9%) | 346 (17.9%) | 603 (31.1%) |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기준>

- 위 통계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함.
- 친밀한 관계: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 사회적 관계: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 일시적 관계: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 만남.
- 가족 관계: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 모르는 사람: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 미상: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그림 4] 가해자 현황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중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은 전체 3,251건 중 773건(23.8%)으로 미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친밀한 관계에 의한 촬영물 유포는 “리벤지 포르노”로 불려 왔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가해자 관점의 ‘포르노’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피해 유형을 적절하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촬영물”이라는 용어로 명명해야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은 휴대폰, 온라인 등의 매체를 활용하므로 전 연령대에서 접근성이 높고 피해촬영물을 소비하는 다수의 익명 동조자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고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자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

### • 디지털 성폭력은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미지는 개인의 일상 활동, 평판, 인격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는 등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지의 합성, 편집 등이 개인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23.1%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폭력은 심각하게 인격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 •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분노, 두려움과 공포,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경험합니다.

↳ 한번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여러 개로 편집되고 새로운 제목이 붙으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전파됩니다.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주변인들이 보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현실의 공포로 변화합니다.

↳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휴대폰이나 SNS를 통해 조롱과 유포 협박을 당하기도 하며, 집이나 학교로 찾아온 누군가에 의해 물리적 위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 • 재유포의 위험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재유포의 위험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는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인격적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은 경험으로 인해 큰 분노를 느끼며 동시에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기도 하죠.

“내 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분노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어떤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고기 덩어리처럼...”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331쪽

### • 피해자 비난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가 더욱 악화됩니다.

↳, 피해가 알려진 이후, 피해자를 탓하는 말과 태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웃다니”, “잘만 지내는 걸 보니, 진짜 피해자가 아니다.”와 같은 말과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전형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이러한 인식이 피해를 드러내는 것, 근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어라. 나 같으면 벌써 진작에 자살했겠다. 욕설 같은 게 와 있고 그런 것들이 그전에 있었던 그 일(성폭력 피해)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장난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 이런 사람도 많고.....”

출처 : SBS News(2019.6.8), “범죄를 장난처럼...사이버성폭력에 멍드는 청소년들

### •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거나 지인들이 피해 영상을 접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매우 크며, 그 결과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의 단절, 위축을 경험합니다.

↳, 특히 (전)연인, 데이트 상대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휴양지에 설치되었는지 모르는 카메라 혹은 카메라가 설치되었던 흔적들을 보면서 여성들은 불안을 경험하고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번호를 누구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팀플에서 만나면 번호를 교환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로 알려준 다음에 좀 쌓이면,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좀 쌓이면 주기적으로 탈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기화하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만 나 알게 만들고 다시 또 탈퇴하고...”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314쪽

“믿었던 남자친구가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봐 두렵다.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깔깔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

출처 : 여성신문(2019.4.1), ‘불법촬영의 나라’...처벌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 운다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 4. 디지털 성폭력,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마련

• 2017년 9월, 정부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내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 피해유포물 삭제 :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 모니터링 : 유포가 의심되는 이미지 및 영상을 토대로 유포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등 모니터링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 ■ 단속 및 가해자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서버, 유동 IP 검색은 물론 국내 체류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에 주목하고 주요 가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선언했으며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운영되는 성구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 유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촬영물이 아닌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도록 관련법도 개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시행:2018.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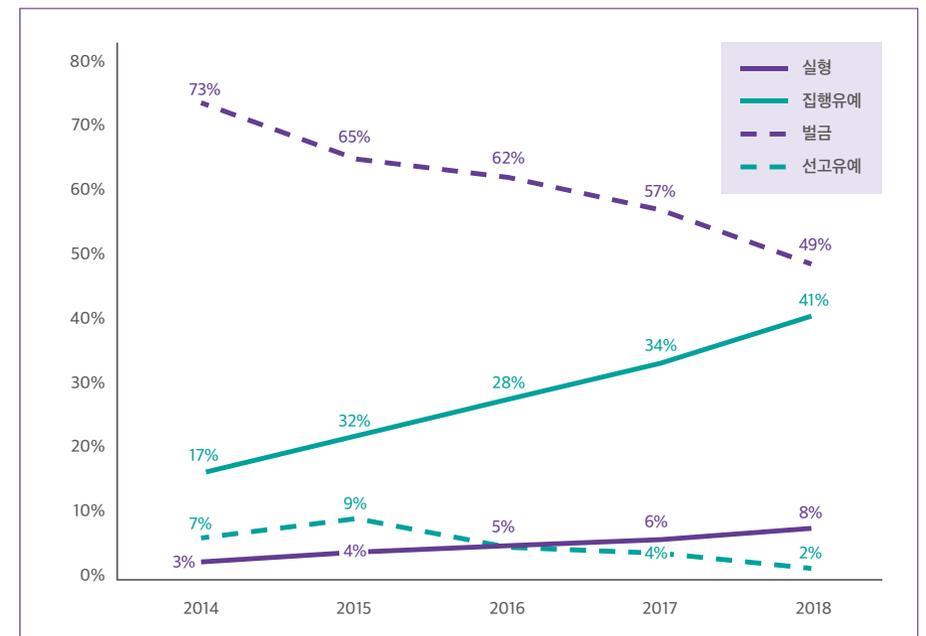
-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징역형(최대 7년)으로만 처벌
-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 신설(최대 징역5년, 벌금 3천만)
- 촬영 당시 동의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유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수준 상향(최대 징역5년, 벌금 3천만)
-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로 한정하던 유포행위 처벌대상을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처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시행: 2018.9.14.)

- 국가는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 가능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이 되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가 됩니다.

•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존의 판결이 벌금형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징역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폭력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림 5]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지 판결 통계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2019)

## II. 이것도 디지털 성폭력인가요?

1. 디지털 성폭력, 한 눈에 보기
2.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사례
3. 그 밖의 디지털 성폭력

### 1. 디지털 성폭력, 한눈에 보기

• 디지털 성폭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 유형              | 적용 법률  | 성격   | 예시  |
|-----------------|--|--|---|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촬영<br>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형·직접 촬영형</li> <li>•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li> <li>•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촬영(소위 몰래카메라)</li> <li>• (신체 일부)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li> <li>• (행위)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li> </ul>  |
|                 | 유포<br>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br>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행위 촬영물 유포·재유포</li> <li>• 본인 동의 촬영물(최초 유포자 본인) 포함</li> <li>•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li> <li>•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li> <li>• 업로더(해비업로더 포함)</li> <li>• SNS 단체대화방, SNS, 성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li> <li>• 보복성 유포</li> </ul>        |
|                 | 재유포<br>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li> <li>•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li> <li>•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li> <li>•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li> <li>•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li> </ul>                            |
|                 | 유포 협박<br>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li> <li>•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하드,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li> <li>•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li> </ul>   |
|                 | 유통·소비<br>정보통신망법 제42조<br>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br>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br>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br>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br>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br>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li> <li>•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 등과 함께 유포</li> <li>•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 앱 등 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력)</li> <li>•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li> <li>•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li> <li>• 게임 내 성희롱</li> <li>•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li> </ul>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br>정보통신망법 제70조<br>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br>형법 모욕죄 제311조   |  |   |

## 2.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사례

### 1)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화장실 벽이든 문이든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볼일을 볼 수 밖에 없으니  
까, 화장실에 앉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데 이려고 있는 제가...”

출처 : 주지현(2019), “페미니즘’들”, 『여성학논집』 75쪽

- 화장실 및 탈의실·숙박업소 등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불법촬영은 초소형 또는 변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설치형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동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촬영 행위자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통되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또는 성인사이트에 유포되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 ▶ 해당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예전에 전 남자친구가 계속 졸라서 우리끼리만 보기로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한 달쯤 뒤에 함께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누군지 밝히기는 어렵다며 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저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이메일과 링크를 받았습니다. 링크 속의 영상은 그때 찍은 영상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9), “2020 한국 사이버성폭력을 진단한다”

- 성적 촬영물이란 성관계 촬영물,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되는 등 성적 신체 촬영물을 뜻하며, 이것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는 것이 바로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입니다.
- 성적 촬영물 유포 피해는 다른 젠더 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되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명명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피해촬영물은 범죄의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 피해자가 촬영에 합의하였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 해당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3)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 유포 피해는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 아래 놓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자신이 훼손당했다고 느끼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이 경우 피해자는 더 큰 피해가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폭력을 견디며 착취를 당하는 관계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이 강간 및 성매매, 데이트 폭력 등으로 확장됩니다.
-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지만,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헤어지려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위협한 것 또한 협박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일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떠나, 이런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만 있었어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출처 : 한국일보(2019.5.14), “전 여자친구에게 ‘얼굴 못 들고 다닐걸’ ... 대법 ‘협박죄 맞다’”

####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사진 합성

A(피해자)의 얼굴과 포르노 배우의 노출 사진을 합성하여 A의 사칭 SNS 계정을 만들었다. ‘저랑 원나잇 하실 분?’, ‘조건 만남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A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둠으로써 피해자에게 초대남(한 커플이 다른 남성을 ‘초대’하여 함께 성관계를 갖거나, 초대된 남성과 커플인 여성이 성관계를 갖고 커플인 남성이 지켜보는 것),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의 연락이 가도록 하였다.

출처 : 한국경제(2018.3.30), “시로 음란물에 ‘여사친’ 얼굴 합성...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SNS 계정(일명 ‘능욕’계정)에 B(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도록 메일로 의뢰하여 B의 신상 정보를 함께 올리고, “이년 능욕해 주세요” 등의 코멘트를 달아 다수의 남성들로 하여금 B를 성적으로 모욕하도록 유도하였다.

출처 : 한겨레(2018.1.21), “여성 지인 사진 음란물과 합성...피해자 우는데 가해자는 멀쩡”

- 이미 공개된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 동기·선후배·동료 등 지인 여성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특히 또래 집단의 평판이 중요하고 성적 규범을 인지하기 시작한 10대의 여성 청소년은 합성된 사진을 이용한 사이버bullying에 더욱 취약합니다. 프로필 사진 등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성적인 의미로 합성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인 여성의 사진을 합성 의뢰하는 사람,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남성에 동조하여 피해 여성에게 성적 위협과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람, 합성 이미지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등에 이용하는 사람 등 각각의 행위가 더해져 피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 스마트폰 메신저, 온라인 게임, SNS 등지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진 성적 합성의 경우 다수가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거나(‘떼카’), SNS에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친구들이 몰려와 비난 댓글을 다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또한 합성이미지를 유포한 사람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5) 불법촬영물 공유 & 소비

### ■ 불법촬영물 공유 및 P2P 다운로드

한 피해자가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한 이후, 6개월 동안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가 공식 확인된 영상만 총 2700개에 달했다. SNS나 P2P 사이트의 조회 수는 40만 명. 이는 최초 유포자부터 제3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웹하드, SNS, P2P 등 다양한 곳에서 매일 업로드했기 때문이다. 180일 기간에 2700건이 올라왔으니, 대략 보더라도 매일 15건 이상 유포된 것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1), “찍어도, 봐도, 유포해도 안됩니다”

- 성인사이트 못지않게 P2P(peer to peer) 방식의 ‘웹하드’에서도 불법 촬영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웹하드는 파일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한 개의 파일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P2P 방식을 사용한 파일 공유·유통 플랫폼으로서 개인이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만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가 P2P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유통이 확산됩니다.

- 이러한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웹하드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키워드로 촬영물을 유통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을 합법적인 콘텐츠인 것처럼 둔갑하면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 ■ “파일 조각일 뿐이라고요?": 토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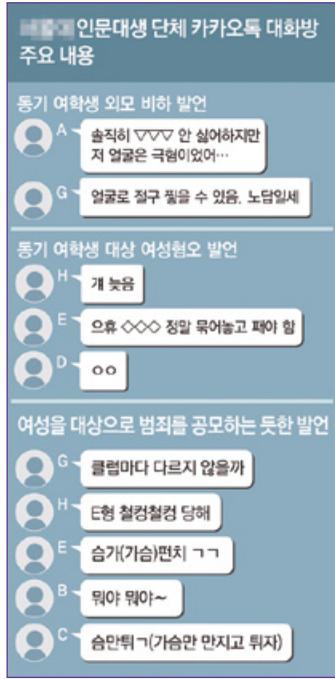
- 토렌트를 통해 유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토렌트는 인터넷 곳곳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한번 다운로드 하면 그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일의 한 조각이 유포됩니다. 즉, 불법촬영물 토렌트 다운로드 행위는 그 자체가 재유포 행위가 됩니다.
- 토렌트를 통한 파일정보 공유도 음란물 유포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업로드 또한 웹사이트 유포와 동일하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결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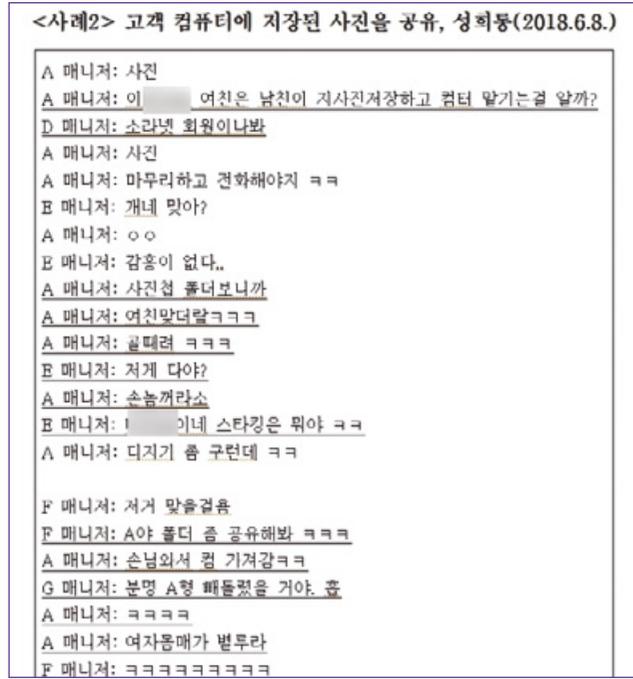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2019.7.29), 대법, “음란영상 받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 유포 땐 형사처벌”

### ■ SNS 단체대화방 내 성희롱 및 촬영물 유포

- 최근 많은 대학, 직장, 동호회 등의 SNS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및 성희롱, 성매매 모의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공간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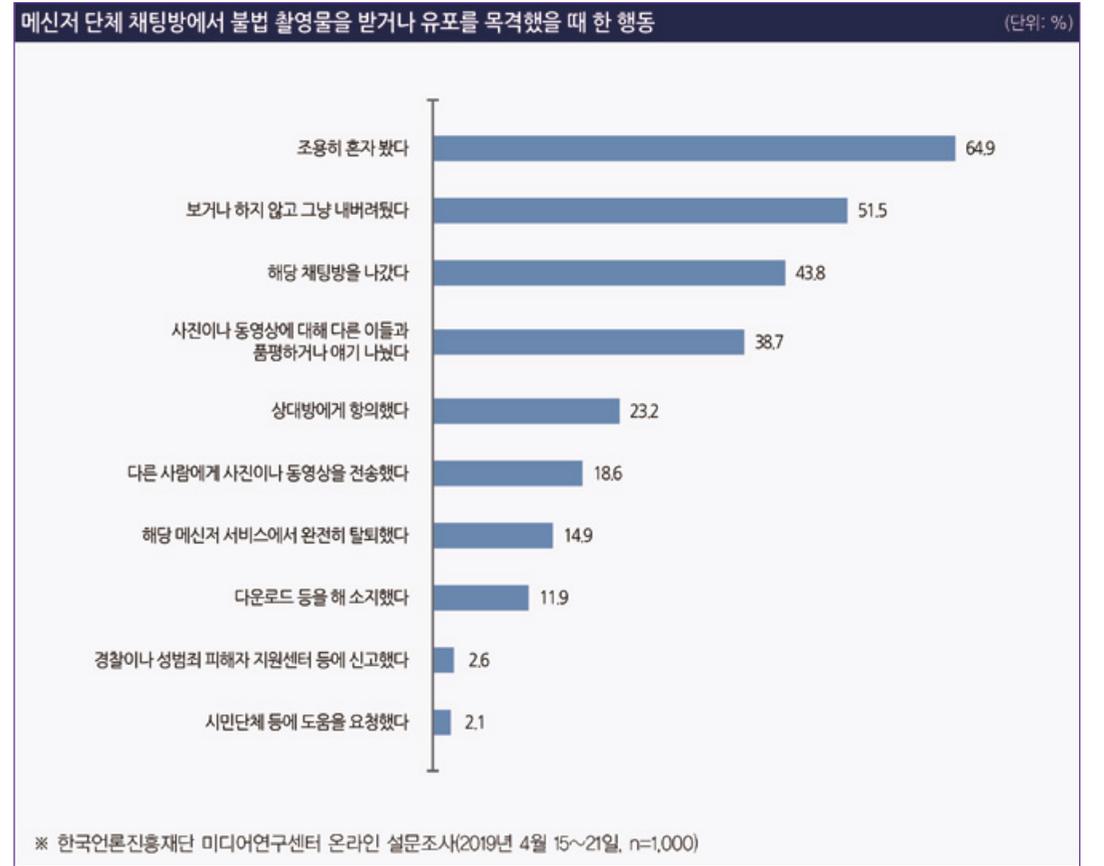


[그림 6] 대학교 남학생 SNS 단체대화방 사례  
출처 : 동아일보(2016.7.12) 성희롱 '단톡방' 공개가 사생활 침해?



[그림 7] 유통업체 오픈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출처 : YTN(2019.09.03.).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카톡방서 고객비하·성희롱 논란.

- SNS 단체대화방과 같은 곳에서는 여럿이 함께 이미지를 공유하며 성희롱을 하거나 직장에서도 고객의 사진이나 외모를 두고 함께 품평하는 사건들이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 SNS 단체대화방에 함께 하고 있는 다수의 남성들 역시 여성의 몸 사진을 찍고,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많은 이들이 해당 채팅방을 나가거나 상대방에 항의하거나 메신저 서비스를 탈퇴하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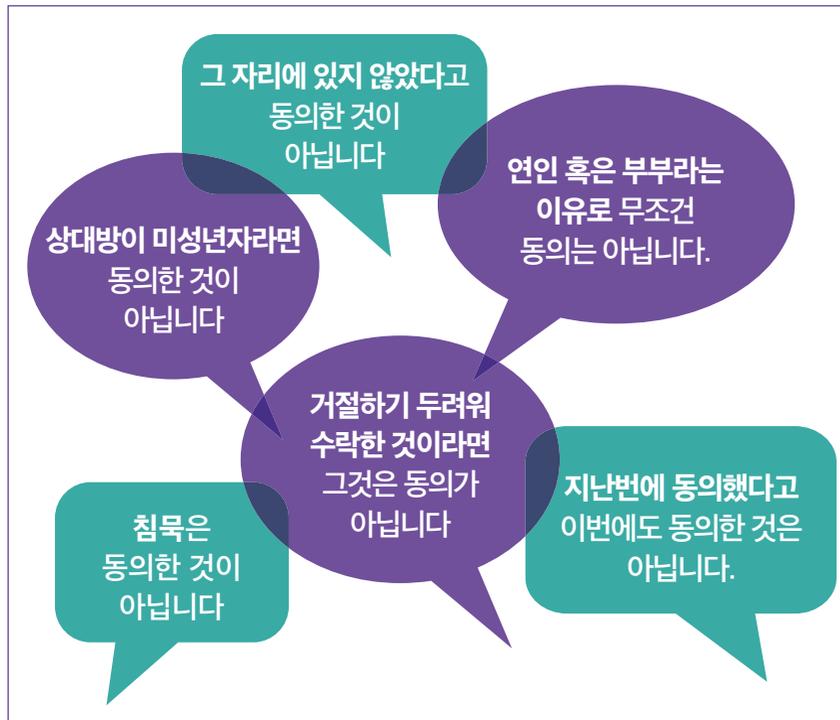


[그림 8]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한 행동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19년 4월 15~21일)

- 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 단체대화방 사건이 발생한 주요 대학에서는 SNS 단체대화방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한 대학에서는 성희롱과 연관된 남학생 6명 모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3. 그 밖의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들 중에는 외관상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나 친밀한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대등한' 것처럼 눈속임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림9] SEXUAL ASSAULT YOUR RIGHTS AND THE LAW  
출처 : [www.wlsnsw.org.au/resources/sexual-assault/](http://www.wlsnsw.org.au/resources/sexual-assault/)

#### 1)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거예요”: 온라인 그루밍

랜덤채팅앱에 들어가면 그런 애들 많아요. 어르고 달래주고 말 좀 들어주면 해달라는대로 해줘요. 처음엔 양말 신은 사진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몇 차례 했더니 애가 날 믿는거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스타킹, 속옷 등의 사진을 요구했죠. 너가 보내준 사진들 어디 퍼트리거나,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하면 더 다루기가 쉬워지죠.

출처 : 닷페이스(2017.12.20), “랜덤 채팅앱에서 심대인 척하고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착취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주로 가정환경·교우관계에 있어 취약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외관상 자발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감과 신뢰를 쌓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거짓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을 찍게 하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 즉, 그루밍을 이용한 성폭력은 온라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통제 하에 있게 된 피해자가 성폭력 혹은 성매매 등에 내몰리는 등 성착취가 확장됩니다.
- 거절할 수 없는 취약성을 이용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와 동등한 권력 위치가 아닌 경우, 그 행위를 거절했을 때 피해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볼 수 없습니다.
- 법원은 대면한 적 없이 채팅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 연령, 이름 등을 파악, 이용하여 **피해자 스스로 몸을 촬영하여 전송케 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스스로 동의해서 촬영한 거예요”: 스튜디오 및 개인 방송에서의 촬영

- 광고나 화보 등 스튜디오 촬영 과정에서 모델은 신체 노출에 대한 최초 계약 범위를 넘어 더 노출의 수위가 높은 포즈나 의상 착용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관상 자발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 피해자가 주저할 경우 ‘저 사람들 다 돈내고 왔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식으로 압박이 이뤄집니다. 연예인 지망생, 모델 지망생이라는 점을 악용해 다시는 연예인, 모델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으로 촬영을 강요 하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위계 관계 속에서 촬영이 이뤄졌다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진 촬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약속받은 임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업계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진다거나 이미 촬영된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계약과 다른 요구를 명백하게 거절하지 못한 경우를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불법촬영물 단속이 강화되자, 웹하드 업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에서도 스튜디오 촬영과 마찬가지로 BJ들에게 강요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제작자와의 위계적 관계로 인해 성착취적인 환경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위치를 상상해 봅시다.

## 3)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 흔히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행위 동영상이나 성적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나 음성인 아닌 텍스트에 의해서도 성폭력이 이뤄지고 있지요.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SNS 단체대화방, SNS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이나 비하, 혐오표현이 대표적입니다.
-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닌 성기 혹은 신체 부위로 환원하며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확산·강화하는 이러한 혐오표현의 사용은 인권의 가치를 명백히 훼손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 ■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 우리는 여성 아나운서나 연예인의 몸매 및 의상, 연애는 물론 그들이 SNS에 남긴 넋두리까지 평가를 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그 대상이 유명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속옷 판매 쇼핑몰에 업로드된 포토 후기, 일반인의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 여성을 폭력의 대상, 성적 도구로 재현하고, 남성이 마음만 먹으면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위계적 젠더 질서가 반영된 은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랭킹전을 하는데 자꾸 팀원이 트롤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도 여자같고, 실력에 비해 랭킹만 높아서 헤지인가 싶었죠. 겹도 못하면서 랭킹전은 왜 하나 싶고, 맨날 남자애들한테 버스만 타서 겹하는게 못마땅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하는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각색)”

출처: 스포츠뉴스. (2019. 7. 8). “‘헤지’가 말하는 ‘헤지’ 드립, 롤에서 내 이름은 왜 욕이 됐나?”

- 여성 게이머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게임 내 온라인 성폭력을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불문하고 통상 랭킹에 비해 실력이 모자란 것으로 평가되는 게이머에게 사용되는 은어들은 그들을 여성으로 간주하며 조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보이스트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여성임이 더 쉽게 표지되기 때문에, 팀보이스를 끄는 것만으로도 여성으로 인지되고 성적 비하와 욕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우리는 왜 누군가를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 식별, 분류하고 평가하려 할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무시하기 위해 왜 그러한 분류 방식을 빌려올까요? 모두가 성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개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젠더 평등한 사회입니다.
- 위와 같이 불법촬영이나 이미지에 기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어나 유·무형의 방식으로 여성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온라인에서의 스토킹

총학생회장 단독 후보자 P씨(24)는 2018년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여학생 A씨의 학과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에브리타임 게시판 등에 “OO학과 OO씨한테 관심있다.”는 익명 글을 올리고, 2주에 걸쳐 총 7차례의 익명 쪽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인천투데이(2019.11.11), A 총학생회장 후보 '지속적 스토킹' 파문

- 온라인에서의 스토킹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타인에게 접근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스타그램의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농담 혹은 대화를 유도한다거나, 성적 비하와 모욕의 의미를 담은 은어를 보내는 행위 등도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이 역시 지속적인 괴롭힘을 통해 여성의 행위를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서보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결별 통보나 결별 이후, 혹은 업무 처리 등 아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력, 위협, 학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흔히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경우,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토킹은 또 다른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큼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언제, 어디서 어떠한 가해 행위가 이뤄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학교, 직장 등 일상을 중단하게 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여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자신의 지인들까지 고통받는 것을 우려하여 연락을 끊고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토킹의 방식은 다변화되고 있지만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은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률들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Ⅲ.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예방과 대응을 위한 나의 역할

1. 대학,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2. 누군가의 피해촬영물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3.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 1. 대학, 직장 등 공동체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 1) 대학에서

##### ■ 학생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 대학문화를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

- 대학은 구성원의 연령이 1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에 이르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과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연구원 등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조직입니다.
- 학교 내 각자의 위치가 다양한 만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유형과 특성 또한 다양합니다.
  - 학과나 동아리 남학생들에 의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의 성희롱
  -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에 의한 성적 이미지 유포 및 합성, 협박
  - 교수나 선배, 동기에 의한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그루밍
  - '대나무 숲', '에브리타임' 등 게시판을 이용한 여성 대상화, 불법촬영물 소비
- 관계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교수와 학생, 선후배 관계, 남학생과 여학생간, 학교 기구와 학생 개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 또한 구조적으로 여학생이나 비정규직 여직원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 교수나 고위급 직원은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 젠더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지만 학생자치단체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학교 문화와 구조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생각해 봅시다.
- 내가 학생이라면 무엇을??

-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색하기 만들기
- 피해 사실을 피해자나 신고센터에 알려주기
-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참여, 기부를 통해 힘을 실어주기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상황에 참여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 학내 사건처리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과 시정을 요구하기
- 학교 내 성폭력처리절차를 통한 결과가 부당할 시에는 다른 학교 내 다른 학생소모임,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 • 사건 발생 시, 동아리·학생회·그 밖의 단체가 나설 때 유의할 점은?

- 디지털성폭력 피해나 가해가 동아리, 학생회,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공론화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피해 내용에 대한 소문 유포 및 비난 등은 2차 피해를 야기합니다.
- 조직을 위해 혹은 다수결이란 명분으로 현실에 순응하고 가해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 피해자가 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 보호와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학교 내외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공식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교수 및 상담소 종사자 등의 역할

#### • 교수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합니다.

- 교수 및 관리자의 태도와 인식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사건의 진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 수업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확증 편향된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을 지적해주고, 그것이 지식 생산을 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임을 설명합니다.

#### • 사건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학교 내에서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응급 및 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곧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학내 전담기구나 인권센터 등 상담 창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법적으로 명백한 유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학내 성폭력 사건처리 및 징계 규정을 살펴보세요.  
아래와 같이 교수에 의한 2차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삶에 디지털 매체가 갖는 비중, 디지털 기술의 특성, 여성에 대한 성적 평판의 의미와 확산 속도 등을 생각해 봅니다.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안내합니다.

#### • 교수에 의한 대표적 2차피해 예시

- 사건에 대한 선부른 판단(“별일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 가해자 옹호와 두둔(“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선배인데. 실수한 거지.”)
-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곤란해지니 일을 키우지 마라”,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다른 일로 힘들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가해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 네가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 함(지도교수가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나란히 앉혀 놓고 화해하라고 함. 지도교수가 실험실에서 양 당사자의 자리를 옆에 붙여 놓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
- 가해자를 훈육한다며 야단을 친 후, 증거물을 당장 삭제하라고 지시
-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트림.

#### • 학내 담당자와 교수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하세요.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인지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 등에 도움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객관적인 태도나 조화로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자칫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학교 혹은 학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적인 조언이나 비공식적 개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상황을 경청합니다. 이후 현재 피해자의 상태(건강, 일상, 학업 등),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동체에 도움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기관 내 또는 기관 외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합니다.

####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전산상의 개인정보도 조심히 다루주세요.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지는 이들의 범위는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역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학교, 학과, 성별, 고향, 친구 등 '식별 정보'를 포함합니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미처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피해자의 소속 학과, 연락처, 친구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 성폭력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디지털 환경과 학생들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기사 및 게시글, 댓글들이 공공연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여성에 대한 성적대 상화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교묘히 합리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를 훼손합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기술이 가진 영향력, 파급효과를 이해하고 젠더 평등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와 기술 속에 놓인 '나'의 생각과 믿음의 체계가 어떤 경로로 형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통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접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디지털 공간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학교나 공동체에서는 성차별적인 정보를 두고 정보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보는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직장, 군대에서

“직장 내 탈의실에서 우연히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살펴보니 카메라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여성 직원에게 알렸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누가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출처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은 모르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직장 내 아는 관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을 비롯하여, 직장 내부 게시판 및 소통, 단톡방에서의 이미지·영상물 유포, 악플, 성적 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디지털 성폭력 및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학교나 직장 등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적 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물론 해당 조직까지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혹시 디지털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합리적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고용노동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http://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직접방문 또는 전화상담(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군대나 구금시설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가권력에 의한 2차 피해가 있을 경우(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법체계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도 인권위의 권고 결정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권고 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2. 누군가의 피해촬영물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 타인의 피해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피해가 더 커진 후 알게 되었을 때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신고, 고소, 삭제, 상담 등 사건 처리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게끔 첫 번째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우선 공감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이해하고, 대응방법을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공감해주세요. 선부르게 위로하거나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충분히 듣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안타깝지만 누구나 살면서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옆에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 피해 회복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 피해자가 유포 등의 피해 후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고 격려합니다.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나의 의견을 강요하지는 말아주세요.

- 피해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회복은 서서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곁에서 함께해 주세요.

• 그 전에, 나의 성적 가치관, 성폭력 통념을 미리 점검해봅니다.

### 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 강간이나 추행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은 심각한 피해가 아닌 것 같다.
- 가해자는 단순히 호기심이거나 장난이었을 수 있다.
- 피해자의 행실이 피해를 자초한 면도 있다.
- 피해자가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 사건 이후 당당하거나 밝은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는 '진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피해자가 다른 의도가 있어 피해를 고소·폭로할 수도 있다.
-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 수 있을까', '연애나 결혼이 가능할까' 걱정된다.
- 법적·제도적 해결만이 사건의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 성폭력 피해는 어쨌든 숨기는 것이 낫다.
- 피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테니, 내가 주도 하여 나서야 한다.

- 나의 생각은 어떤가요? 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한 문항이라도 체크를 하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젠더 불평등에 기반한 인식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미래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같은 말과 태도는 피해자의 대응과 회복을 방해하고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 • 누구나 피해촬영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기 힘들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해당 플랫폼 신고 창구에 신고해 주세요. 불법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촬영물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다면 플랫폼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피해자의 경우, 피해촬영물 발견 시 직접 대응하기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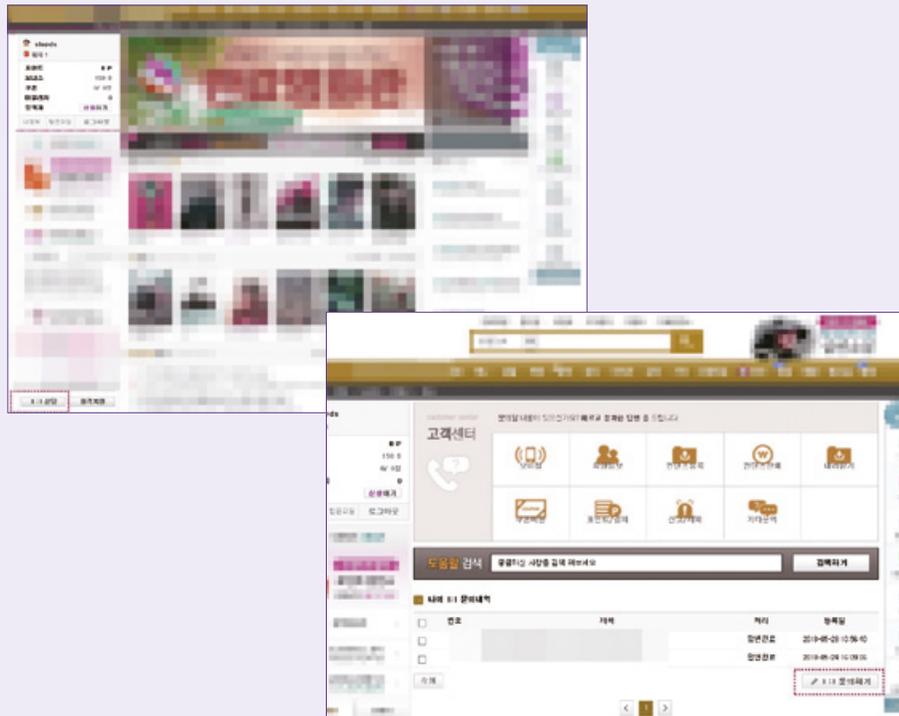
## ▶ 플랫폼별 삭제방법 알아보기

### • 웹하드

피해촬영물 게시물의 링크·제목·콘텐츠 번호 등의 정보 확보 후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이메일 or 일대일 문의하기를 통해 신고

① 웹하드에 로그인 후 '고객센터' / '1:1 상담' / '1:1 문의내역' 등 신고 창구 선택

② '상담하기' / '1:1 문의하기' 등 선택하여 삭제 요청 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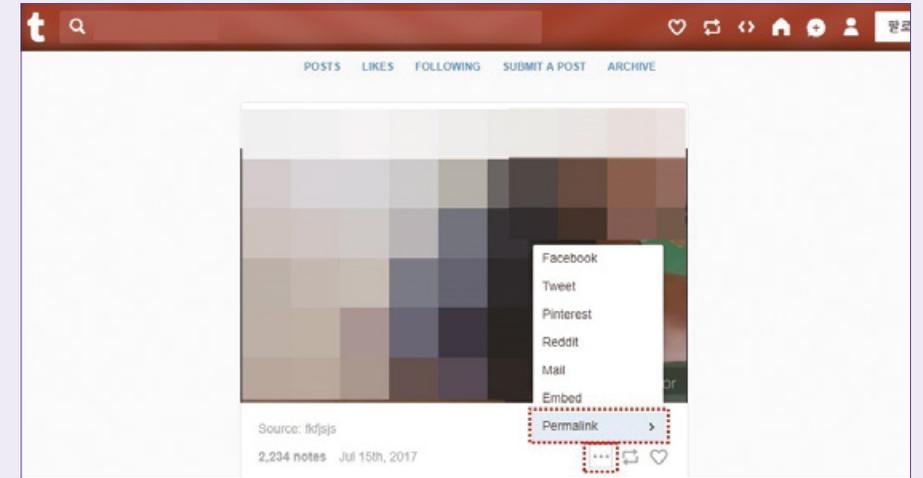


### • 텀블러

공유 아이콘(종이비행기 모양) or 포스트 오른쪽 상단 메뉴의 "신고" 클릭-내용 입력

① 해당 게시물의 '...' 모양 아이콘을 선택 후 'Permalink' 선택

② 주소창이 퍼머링크로 바뀌어 표시됨("http://\*\*\*\*.tumblr.com/post/숫자"까지가 퍼머링크에 해당)



③ 동영상의 경우, 추가적으로 동영상의 퍼머링크 파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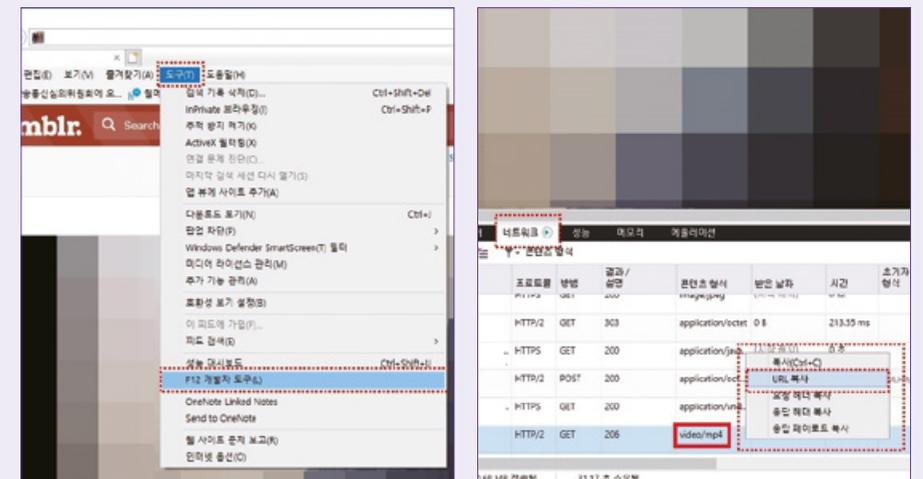
(인터넷 브라우저에 따라 퍼머링크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음)

###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 'F12 개발자 도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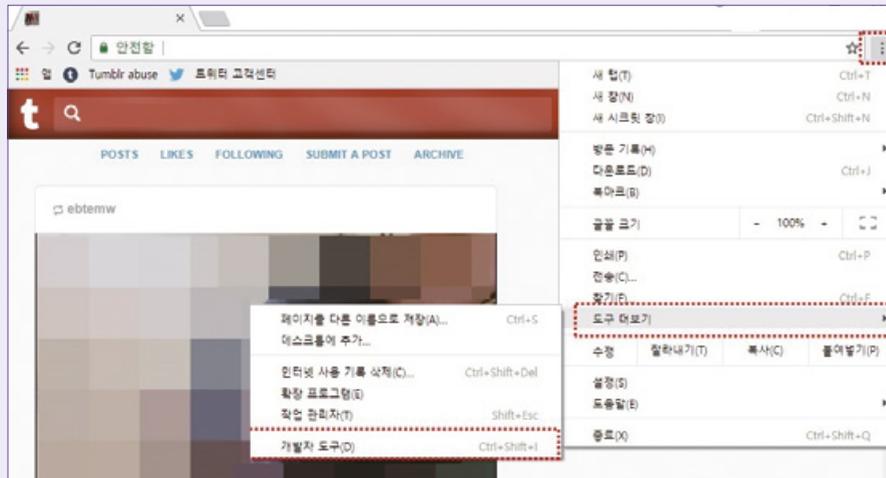
▶ 하단의 개발자 도구 팝업창에서 '네트워크' 탭 선택 후, 동영상 재생

▶ 콘텐츠 형식이 'video/mp4'인 항목을 골라 마우스 우선택 후 'URL 복사'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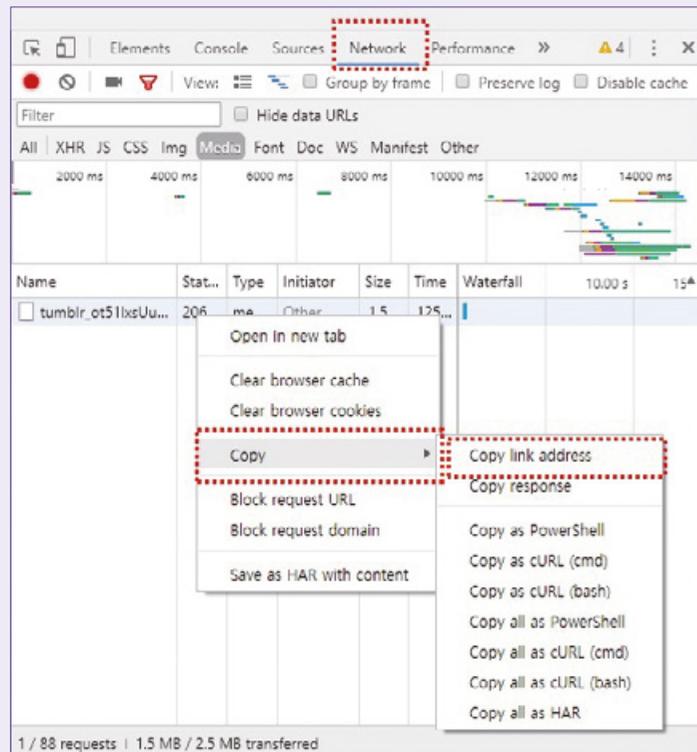
## 크롬 브라우저

▶ 브라우저 맨 위 오른쪽 ':' 선택 후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 선택



▶ 'Network' 탭 선택 후 동영상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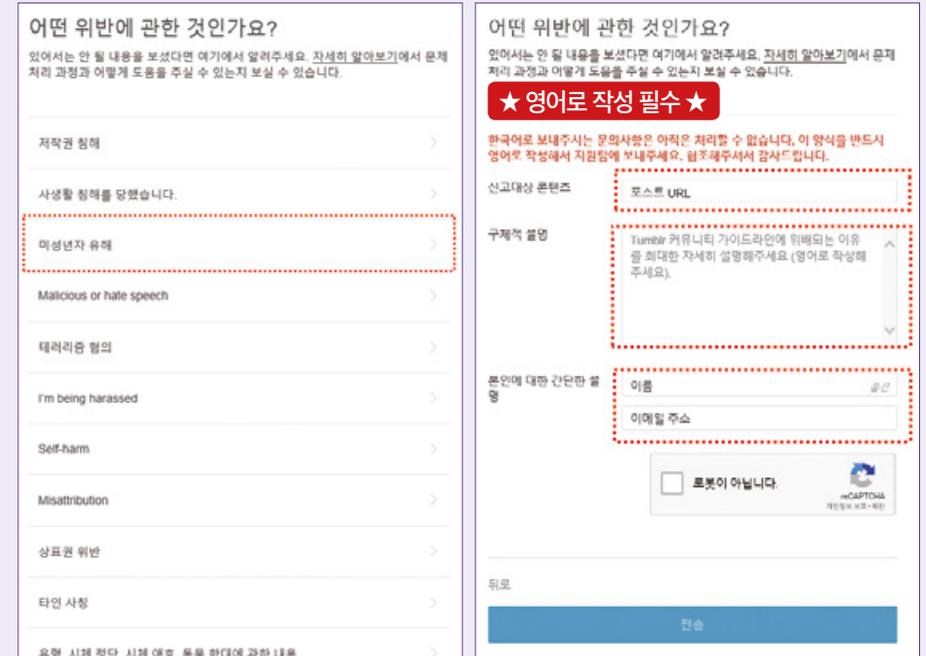
▶ mp4 등 동영상 관련 파일 형식으로 끝나는 항목을 골라 마우스 우선택 후 'Copy - Copy link address'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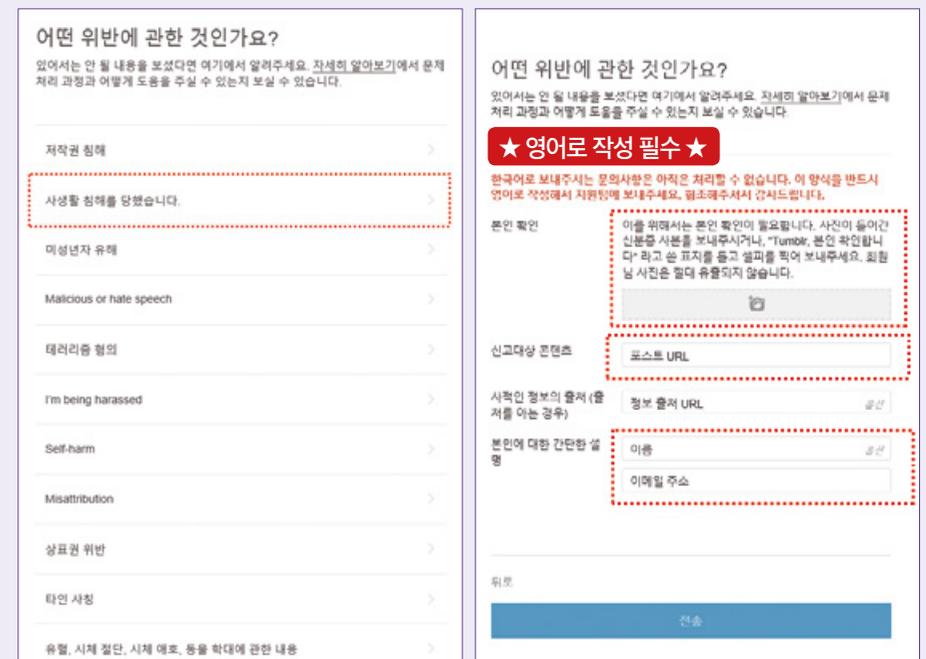
④ 텀블러 가이드라인 침해 신고 주소(<https://www.tumblr.com/abuse>) 접속

⑤ 피해자 연령에 따라 삭제 요청 방법 상이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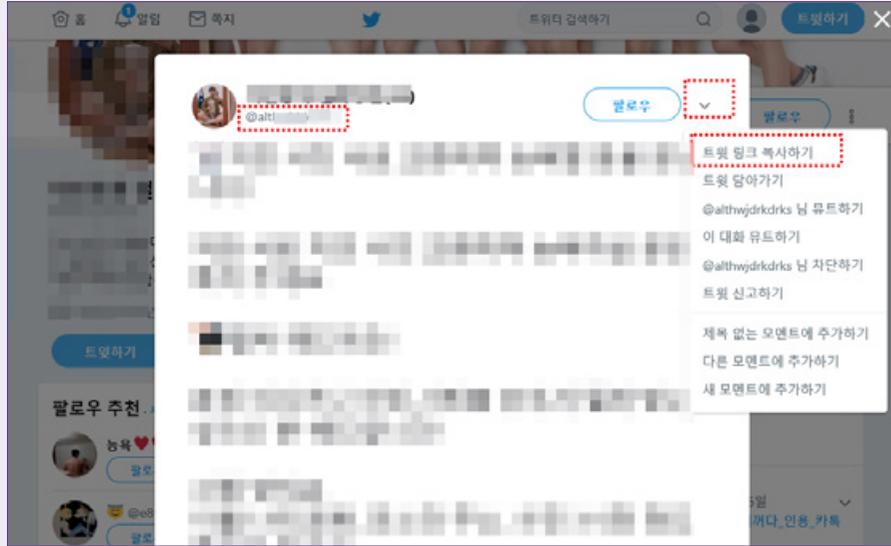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트위터

고객센터 접속-트위터에 문의하기-“가학적인 행위 또는 민감한 콘텐츠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선택-신고 사유 선택 후 제출

① 해당 게시물의 'v'를 눌러 트윗 링크 복사하고 @로 시작하는 게시자 아이디 복사



② 신고를 위한 고객센터 주소([http://support.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http://support.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로 접속  
 ③ 본인, 허가하지 않은 내 사진이나 동영상 선택

**개인정보 노출을 신고합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 (예: @멘션, 이름, 별명 또는 필명)
-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예: 클라이언트 또는 자녀)
-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예: 친구 또는 그룹)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연락처
- 금융 계정 정보
- 정부 발행 신분증 또는 신분증 번호
- 허가하지 않은 내 사진이나 동영상
- 기타

④ 신고 대상자 아이디에 @로 시작하는 아이디, 트윗 URL에 복사한 주소,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에 상세 내용 작성, 모든 항목 작성 후 제출하기

**신고서 상세 정보**

신고 대상자 아이디

(예: @safety)

신고 내용 관련 증거로 신고하려는 계정의 구체적인 트윗을 제공해 주세요.

트윗 URL

http://

필수 항목입니다.

트윗의 직접 URL을 찾는 방법  
 트윗 외에 다른 문제(예: 계정 프로파일, 프로필 사진 또는 헤더)를 신고하시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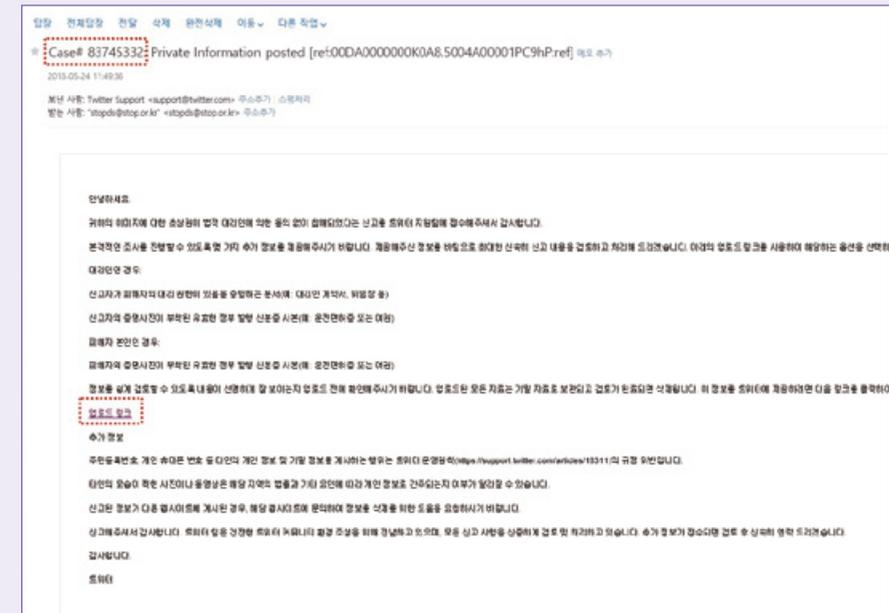
다른 트윗 추가

이 보고서 업데이트 시 이 트윗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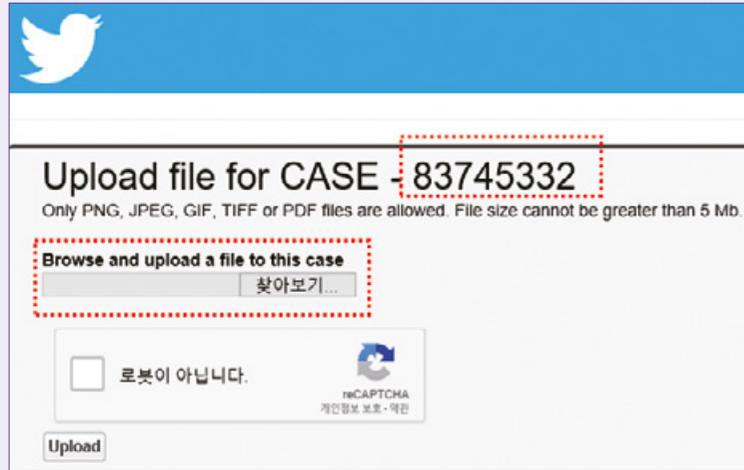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

문제의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해당 사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가지고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답글을 남기는 것 같다면 이를 위에 모두 작성해 주세요.  
 신고서에는 첨부파일이나 스크린샷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해당 트윗이나 계정의 링크만 입력해주세요.

⑤ 제출 후 작성했던 메일로 추가정보 요청 메일 송신



⑥ 케이스 번호 확인 후 업로드 링크 클릭 후 신분증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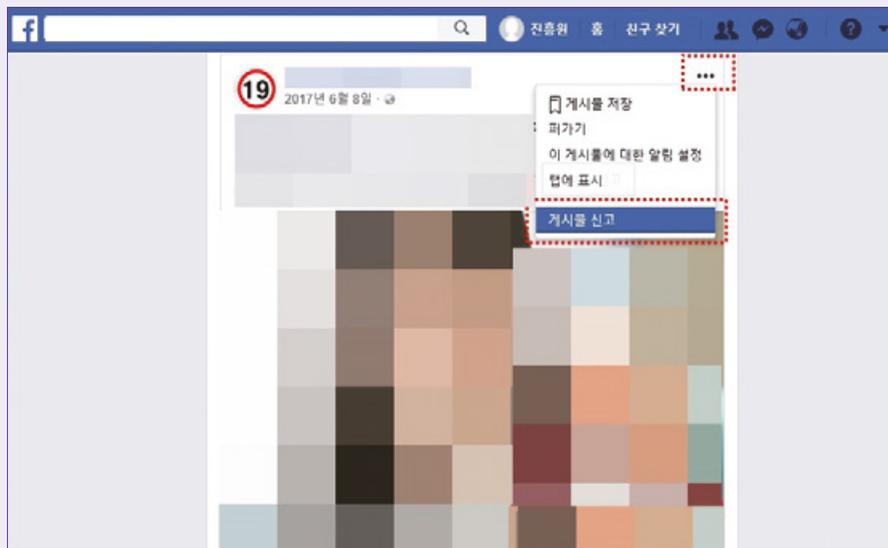


•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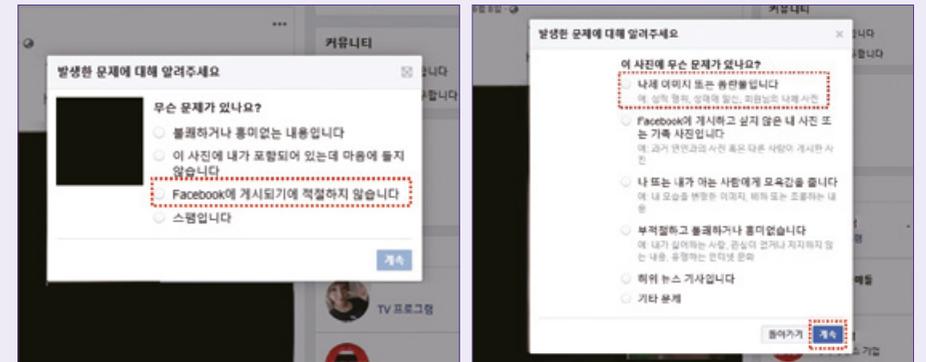
사진이나 동영상 위로 커서를 가져간 후 오른쪽 하단 옵션 클릭-“의견 보내기” or 게시물 오른쪽 상단에 있는 “...” 클릭 후 “의견보내기” 클릭

게시물 / 사진 신고

① 해당 게시물의 ‘...’ 모양 아이콘 선택 후 ‘게시물 신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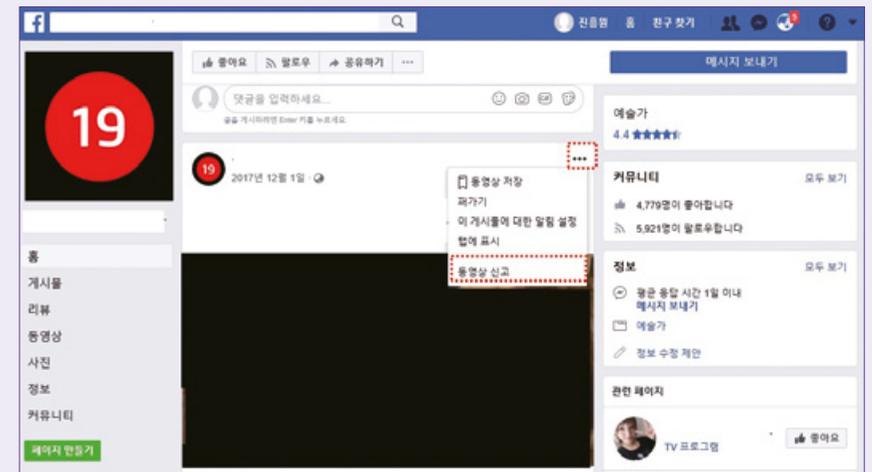


② 해당 내용 클릭 후 ‘계속’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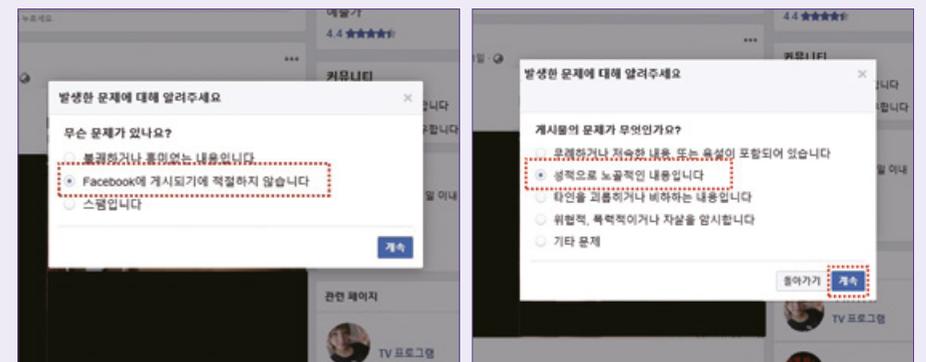


동영상 신고

① 해당 게시물의 ‘...’ 모양 아이콘 선택 후 ‘동영상 신고’ 선택



② 해당 내용 클릭 후 ‘계속’ 선택 후 제출하기



※ 더 자세한 플랫폼별 삭제방법 알아보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게시물 [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

### 3. 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 ■ 자기 비난은 젠더 폭력을 지속시킵니다.

- 내가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자책도 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대응을 주저할 것을 이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대응을 원하나요?

-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에너지나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로 피해자가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이 퇴색되거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의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지나 온라인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등을 인지한 경로와 상대에 대한 정보, 사진/영상물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혼자하기 어려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믿을 만한 주변인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삭제지원 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당신에겐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일상적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말하지 않을 권리
-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처우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 ■ 상황적 한계를 인지하고, 나의 회복력을 믿기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거나 가해자가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목표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해결 및 피해 회복의 과정이 길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의 위력이나 법적 절차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 자체가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작은 도전이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IV.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안내

### 2. 실무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사례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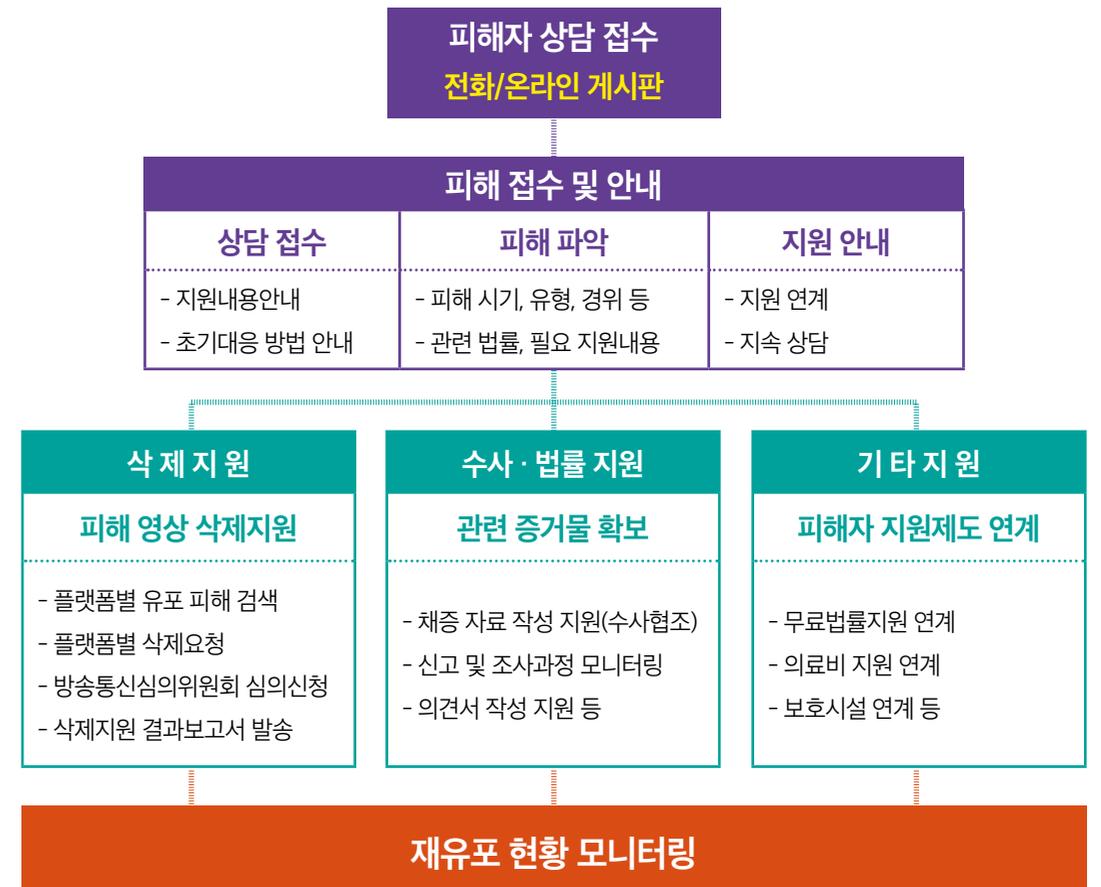
##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안내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상담 및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안내 |                            |
|---------------------|----------------------------|
| 전화                  | : 02-735-8994 (평일 10시~17시) |
| 게시판                 | : www.women1366.kr/stopds  |
| 팩스                  | : 02-6363-9356             |
| 메일                  | : stopds@stop.or.kr        |

### ■ 피해자 지원체계



• 피해 접수 및 안내 : 내담자가 호소하는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주요 요청사항을 파악합니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안내하며, 내담자의 주요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합니다.

• 피해유포물 삭제지원

- 피해유포물 삭제 :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된 피해유포물을 삭제 요청합니다. 유포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재유포 등 유포물이 계속 발견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삭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 : 유포가 의심되는 이미지 및 영상을 토대로 유포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모니터링 합니다.

- 삭제 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 삭제 건수와 주요 유포 플랫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수사지원 연계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경찰에 신고를 원하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유포 URL을 확보하고 성인사이트 등을 캡처하는 등 채증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내용>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민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 의료지원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진단서 발급 등 치료 보호에 소용된 비용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기타 서비스 제공 : 돌봄 비용 지원, 주거지원, 보호 지원 등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 불법촬영 : 화장실이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 숙박업소나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몰래 설치된 촬영기기 등으로 촬영당한 경우, 피해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합니다.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지원이 어려우며,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비동의 유포 :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스스로를 찍은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영상 및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 유포된 곳(성인사이트 등)의 주소(URL)를 확보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해 주시면 유포 게시물의 제목, 키워드, 이미지 등을 토대로 다른 곳에 유포된 것이 있는지 찾아 삭제를 지원합니다.

• 유포 협박 : 금전 요구, 새로운 영상을 찍어 보낼 것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유포가 의심되는 원본 이미지를 지원센터에 제공해 주시면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기타

- 몸캠 피싱 : 영상이 성인 사이트 등 유포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포가 되지 않고 금전적 피해, 협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지원이 어려우며,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유포, SNS그루밍 등 : 메신저 등 개인 간 주고 받은 영상 등은 즉각적인 삭제 지원이 어렵지만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센터에서는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작업을 비롯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전 확인할 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 촬영물 원본 또는 키워드, URL이 확보된 경우
-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공개된 플랫폼에 유포된 경우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 내방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우
  - 수사·법률 자문 또는 동행이 필요한 경우
  - 의료비 지원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 피해영상물 유포자, 제작자 추적 : 경찰 신고

## 2. 실무자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사례 Q&A

### ■ 불법 촬영

Q. 연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이 숙박업소에서 찍혔어요.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A. 불법촬영 사례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빠른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나, 게시물 제목, 키워드 등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면, 해당 이미지와 키워드를 토대로 추가적인 유포를 발견하고 삭제를 지원합니다.

### ■ 비동의 유포

#### <메신저 유포>

Q.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메신저로 퍼트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동의 유포 사례입니다. 개인간의 메신저로 유포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빠른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을 도와드리며, 원본 영상이 확보된 경우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이트 유포>

Q. 전 연인에게 제가 직접 찍은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사진들이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스로의 몸을 직접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포시킨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른 범죄로 처벌됩니다. 피해발생 시 먼저 유포된 사이트를 캡처하고, 가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나 메신저 등을 캡처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유포된 URL과 피해 이미지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유포협박

Q.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헤어졌는데, 더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성인사이트와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포 협박 사례입니다. 유포 협박은 형법 제30장에 따라 협박죄를 물을 수 있는 범죄이며,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톡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녹음합니다. 영상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원본 영상이 아닌 복제물의 유포

Q. 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많이 삭제하였어요. 그런데 모니터 화면을 찍어서 그 영상을 다시 유포한 경우를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A. '복제물의 복제물'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사진 합성 및 모욕

Q. 누군가 저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이미지와 합성했어요. 저를 사칭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그 사진과 제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서,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및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며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전 증거 확보에 노력을 얻고 싶은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채증 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사이트 등으로 유포된 경우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삭제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 ■ (미성년자) 그루밍

Q. 저는 미성년자인데, 인터넷에서 누군가 문화상품권을 준다며 양말 신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문화상품권을 받았는데, 그 이후 더 야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전의 사진을 올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더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포 협박 사례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0장에 따라 협박죄를 물을 수 있는 범죄이며, 아동·청소년 피해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톡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녹음합니다. 영상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제출하여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유포 불안

Q.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바로 지웠어요. 그렇지만 전 연인의 드라이브나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어딘가에 퍼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포 불안이 심각한 경우 성폭력 상담소에서 심리치료, 의료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V. 우리 모두, 일상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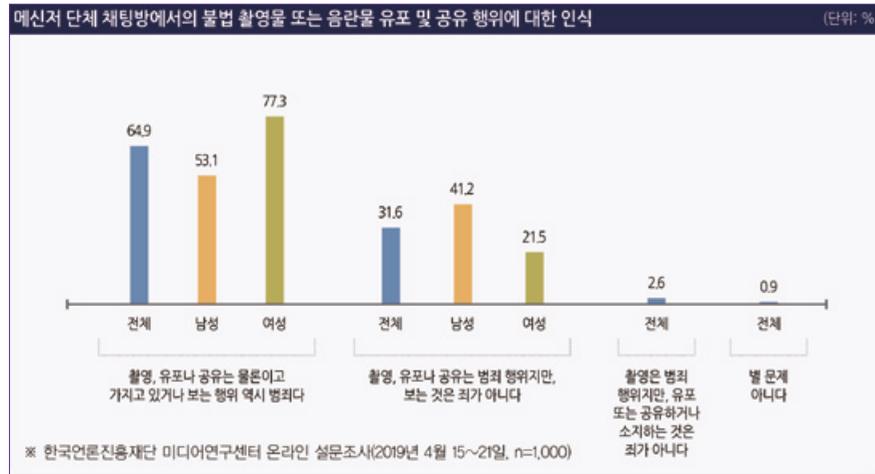
1.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 실천전략, 이것부터 합시다!!

3. 제도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기

## 1. 우리 모두, 일상에서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및 처벌이 확대·강화되고 유통·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책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촬영 및 유포는 물론이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역시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성 77.3%, 남성 53.1%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림 10] 메시전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한 행동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19년 4월 15~21일)

## 2. 실천 전략, 이것부터 합시다!!



[그림 11] 경고장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출처: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

**‘피해 촬영물’ 로 인식합니다.**

- 불법촬영물이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해 촬영물’임을 인정합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 제3자의 호기심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가 더욱 어려워지고 유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응합니다.**

- 보지 않고,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 증거채집 후 유포자를 신고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경찰신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피해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는 저작권자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이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폭력임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

## 3. 제도적 변화에 힘을 실어 주기

- 디지털 성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서만 간주하는 행위를 인권의 관점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 신체 접촉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 신체 부위 노출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가 사소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수록 엄정한 수사 및 재판 역시 기대하기 힘들어집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모멸감은 가혹한 것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에 더 강력히 대처하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더 큰 지지가 필요합니다.

## 참고문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김수아, 장다혜(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89-130

장다혜, 김수아(2019),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지현(2019), “페미니즘’들”, 『여성학논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9), 「2020 한국 사이버성폭력을 진단한다」

대법원 보도자료(2019.6.3),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개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서울특별시(2018), 「디지털성범죄 유통실태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디지털성범죄 해체하기-강사지침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8), 「제1기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 방지 전문상담원 교육-전문이론과정」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2017),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 • 웹사이트

<https://www.genderit.org/indepth>

<https://www.equalrights.org/issue/equality-in-schools-universities/sexual-harassment/>

<https://www.accreditedschoolsonline.org/resources/sexual-assault-awareness-recovery/>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604979/IPOL\\_STU\(2018\)604979\\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604979/IPOL_STU(2018)604979_EN.pdf)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604979/IPOL\\_STU\(2018\)604979\\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604979/IPOL_STU(2018)604979_EN.pdf)

<https://web.iit.edu/student-affairs/handbook/fine-print/sexual-harassment>

<https://www.rte.ie/brainstorm/2019/1001/1079472-can-social-media-tools-be-used-to-stop-cyberbullying/>

<https://blogs.lse.ac.uk/latamcaribbean/2018/09/26/sex-trafficking-and-sexual-exploitation-are-collateral-damage-of-mexicos-neoliberal-fantasy/>

<https://www.change.org/>